



#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는 반려동물 문화, 펫티켓! 기억해야 할 5가지 펫티켓 수칙!

## 반려인이라면 준수해 주세요!



반려견과 동반하여 외출 시,  
목줄·가슴줄(외출시 2m 이내) 및  
인식표 착용 필수!

※ 맹견의 경우 입마개도 필수입니다!

- 과태료 안내 -

목줄 미착용 시 : (1차) 20만원, (2차) 30만원, (3차 이상) 50만원

인식표 미착용 시 : (1차) 5만원, (2차) 10만원, (3차 이상) 20만원

맹견은 목줄 입마개 미착용 시 : (1차) 100만원, (2차) 200만원, (3차 이상) 300만원



2개월령 이상의 개는  
시·군·구청 또는  
동물등록대행기관에  
동물등록을 해주세요.

미등록 시 과태료 : (1차) 20만원, (2차) 40만원, (3차 이상) 60만원



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,  
배변봉투를 챙겨주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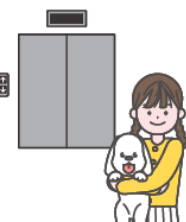
위반 시 과태료 : (1차) 5만원, (2차) 7만원, (3차 이상) 10만원



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,  
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.

맹견 종류 : 도사견, 아메리칸 핏볼테리어,  
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,  
스테퍼드셔 볼 테리어,  
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

위반 시 과태료 : (1차) 100만원, (2차) 200만원, (3차 이상) 300만원



엘리베이터와 같은 공중주택,  
준주택(오피스텔 등) 건물 내부의  
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 
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주세요.

준주택 :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 
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사설, 기숙사,  
다중생활시설,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

동물등록 관련 등록절차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animal.co.kr)에서 확인하세요.

동물사랑배움터(apms.epis.co.kr)에서 동물보호·복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

## 비반려인이 알아두면 좋은 팁!



타인의 반려견의 눈을  
뻘히 응시하지 말아 주세요.  
공격의 신호로  
받아들여질 수 있어요.



타인의 반려견을  
만지기 전 견주의 동의를  
먼저 구해야 합니다.



타인의 반려견에게  
견주의 동의 없이  
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.



타인의 반려견에게  
갑자기 다가가거나  
소리를 지르지 말아 주세요.



누군가에게 소중한  
존재일 수 있는 반려동물에게  
불쾌한 언행은 삼가 주세요.